

**2022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
[인문100년, 예술체육비전] 시행계획**



2022. 3.

학 생 처 학 생 과

2022년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1년도	2022년도
생활비 지원금액 (Ⅰ 유형 및 기초생활 수급자)	○ (Ⅰ 유형)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지원 ○ (기초생활수급자)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추가 지원	○ (Ⅰ 유형)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 ※ 단, '22년 신규선발자부터 적용 ○ (기초생활수급자)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※ 단, '22년 신규선발자부터 적용
신규선발 성적기준 [전공확립]	○ (전공확립유형) 직전 2년간 총 평균 백분위점수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점 이상/4.5점 만점(3.3점 이상/4.3점 만점)일 경우 선발	○ (전공확립유형)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점 이상/4.5점 만점(3.4점 이상/4.3점 만점)일 경우 선발
중간평가 (2+2) 성적기준 ['23년부터 적용]	○ 직전 2년간 백분위점수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점 이상/4.5점 만점(3.3점 이상/4.3점 만점)일 경우 지원	○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점 이상/4.5점 만점(3.4점 이상/4.3점 만점)일 경우 지원(단, '21년 신규선발자부터 적용)

I

사업 개요

□ 목적

-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‘인문100년장학금’ 지원
-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‘예술체육비전장학금’ 지원

□ 추진근거

- 교육기본법 제28조(장학제도 등)
-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 · 제5조(국가의 책무)

II

2022년도 지원방안

1

지원 개요

□ 지원 개요

- (지원대상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(부) 재학생 중 선발·지원 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
- (지원규모) 전년도('21) 지원규모(2.8억원) 예상
 - 인문100년 장학금: 215(백만원) / 예술체육비전 장학금: 65(백만원)
- (지원기간) 전공탐색유형: 4년(정규 8학기), 전공확립유형: 2년(정규 4학기)
 - ※ 정규이수학기에 한해 지원하며, 정규이수학기가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(5년제 학과의 경우 전공탐색유형 10학기, 전공확립유형 5학기 지원)

○ (지원내용) 등록금(전액) 및 생활비

- I유형: 등록금(전액)*,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
- II유형: 등록금(전액)*

* 등록금 범위: 입학금,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

(기준: 학기)

구분	I유형	II유형
공통지원	등록금(전액), 생활비 250만 원	등록금(전액)
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	생활비 250만 원	생활비 250만 원

※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(소급적용 불가)

2 지원 대상 및 기준

□ 신규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

- (선발대상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(부) 재학생
 - 인문 100년 장학금 : 인문사회계열 학과(부)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 (전공탐색유형(4년 지원)) 또는 3학년(전공확립유형(2년 지원))
 -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: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(부)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(전공탐색유형(4년지원)) 또는 3학년(전공확립유형(2년지원))
- (선발인원(예상)) 23명 내외(전년도 수준)
 - 인문100년 장학금: 18명 내외(I유형: 5명, II유형 13명 내외)
 - 예술체육비전 장학금: 5명 내외(I유형: 2명, II유형 3명 내외)

※ 전공탐색유형(4년 지원) 40%, 전공확립유형(2년 지원) 60% 비율로 선발

선발유형		선발대상 (지원기간)	선발규모(예상인원)	
			인문100년(명)	예술체육비전(명)
I유형	전공탐색(I유형)	1학년(4년 지원)	2	1
	전공확립(I유형)	3학년(2년 지원)	3	1
II유형	전공탐색(II유형)	1학년(4년 지원)	5	1
	전공확립(II유형)	3학년(2년 지원)	8	2
계			18	5

- (인원배정)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이 배정되면 단과대학별 재학생 수 비율에 따라 각 단과대학에 배정(자체선발계획 수립 예정)

$$- \text{대학별 배정인원} = \text{신규 선발인원} \times \frac{\text{해당 단과대학 재학생 수}}{\text{해당 계열 총 재학생 수}}$$

- (선발기준)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별도 수립 (인원배정 후)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심사하되, 경제적 수준*이 낮을수록 가점 부여

*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'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이 어려운 자는 10구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점 부여

- 전공탐색유형(4년 지원) : 경제적 수준, 학업성적, 전공분야 우수성,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선발계획 수립 예정
- 전공확립유형(2년 지원) : 학업성적(50%) + 경제적 수준 및 학생역량(50%) 비중으로 대학 자체선발계획을 수립 예정이며, 기본자격 요건* 충족 필요

*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 (3.4이상/4.3만점),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% 이상

구분	학업성적(50%)		경제적 수준 및 학생역량(50%)		
	백분위 점수	배점(50점)	실적내용		배점(50점)
평가 기준 (전공 확립 유형)	▪ 100점 ~ 98점	50	▪ 경제적 수준(학자금지원구간)		10
	▪ 97점 ~ 95점	48	▪ 대회/공모전 수상		30
	▪ 94점 ~ 92점	46	국제		30
			국내	전국	24
	▪ 91점 ~ (성적요건 충족시)	44			시·도
	▪ 대학별 별도기준		10		

1)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 불가

※ 다만, '대회/공모전 수상'은 배점(30점) 내에서 선발 전공계열(특성)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

2) 경제적 수준 및 학생역량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대학별 별도기준은 자체 선발 계획에서 정함

- (장학생 추천)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유형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순위는 I유형, 후순위는 II유형으로 추천·선발
 - ※ 배정인원의 최소 2배수 이상의 학생(사전신청자 포함)을 대상으로 심사
 - ※ 미추천된 차순위 학생은 후보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기간 내 후보자(II유형)로 관리

□ 계속지원 대상 및 기준

- (계속지원 대상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(부)에 재학 중인 자 중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
- (계속지원 기준)
 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취득
 - ※ 성적·이수학점 산출 및 적용 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용
 - 등록금은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지원하며, 생활비는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충족 시 지원

- 단, '20년 이전 신규선발자는 '21년 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없거나 산출 불가능한 경우, 선발 당시의 계속지원 성적 기준 적용

○ (중간평가(2+2) 및 진도보고)

- 중간평가(2+2) : 전공탐색유형(1학년) 선발자 중 3학년 진급자(장학금 수혜횟수가 졸업이수학기 1/2 해당)에 대해 중간평가(성적, 이수학점, 중간평가서) 결과에 따라 잔여 2년간(3~4학년) 지원 여부 결정

※ 중간평가 기준(평가항목 등)은 장학생 선발연도에 따라 적용되며, 중간평가 기준 중 성적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와 관계없이 평가연도의 성적기준을 적용

※ (성적기준 변경 사전예고) 직전학기까지의 총평균성적이 백분위점수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 → '23년부터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이상/4.5만점(3.4이상/4.3만점)(단, '21년 신규선발자부터 적용)

- 진도보고 : 전공확립유형(3학년) 선발자 중 4학년 진급자(학사원장 상 4학년)에 대해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(4학년) 지원 여부 결정

□ 일시지원 기준

- (일시지원) 한국장학재단의 잔여 장학금(계속 장학생의 계속지원 기준 미충족, 학적 변동 등) 발생 시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및 해당학기 등록금 1회(전액) 지원

3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

□ 장학금 지급 관리

- (중복지원)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지원 불가*

*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5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9조

- (지급방식)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
 - 등록금 고지서 상에 “인문100년장학금” 또는 “예술체육비전장학금”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
 -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개별 지급

□ 사후관리

- (공공재정환수법 적용)
 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(2020.1.1.시행) 제2조 제6호,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
- (학적변동)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,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
- (현장점검) 한국장학재단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
 - 장학생 선발, 학적변동 관리, 우선감면, 예산집행(지급·반환 관리 등),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 등 종합적 점검

Ⅲ

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

□ 추진체계



□ 주체별 역할

○ (교육부)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총괄

-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, 사업시행 총괄 등

○ (한국장학재단)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관리 및 운영

-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, 사업 운영 결과보고
- 대학별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, 대학별 장학금 지급, 위반사항 점검 및 조치 등 사후관리
- 장학생 성장지원을 위한 증서 수여식, 역량강화 캠프 운영 등

○ (대학) 장학생 선발 및 관리

- 사업 참여 신청, 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및 관리방안 수립·준수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(반환 및 학적변동 관리 등),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 제출(학기별 1회) 등

IV

추진일정

- ☐ '22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(교육부) 및 시행계획 공고(재단): '22. 2월
- ☐ 계열별 대학 사업 참여 신청(대학): '22. 3월
- ☐ 계열별 학생 사전 신청(학생): '22. 3. 16.(수) ~ 4. 12.(화)
- ☐ 대학별 신규장학생 선발인원 배정(재단) 및 장학생 선발(대학): '22. 4~5월
- ☐ 신규장학생 최종 선발 및 장학금 지급(재단/대학): '22. 6 ~ 7월
- ☐ 계속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(재단/대학)
 - (1학기) '22. 1 ~ 3월
 - (2학기) '22. 7 ~ 10월
- ☐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(재단/대학): '22. 11 ~ 12월

붙임: 한국장학재단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 1부. 끝.

학생과